

[별표 5] 감지부 자동작동시험(제34조 관련)

1. 소화시험설비

가. 시험모형은 가로×세로 각 3m이상 체적은 최소 27m³이상의 크기로 모형의 높이는 자동소화장치를 수직으로 다단 설치하여 연동 시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크기이어야 한다.

나. 시험모형은 연료 연소를 위한 산소공급원 용도로 0.09m³크기 2개의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벽면에 설치하고 다른 한 개는 바닥과 인접한 개구부의 반대편 천장과 인접한 벽체에 설치하며 별도의 과압배출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 최상단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는 방출구 및 감지부가 최대한 천장에 근접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되도록 설치한다.

라. 자동소화장치는 수직으로 다단 배열하여 설치하되(연동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한다) 자동소화장치간 최대 이격거리를 적용하여 최소 기본단위의 최대설치높이에 해당하는 지점마다 자동소화장치 1세트 또는 1대를 설치한다.

2. 시험방법

가. 시험에 사용되는 연료는 n-헵탄을 이용한다.

나. 소화시험은 0.25 m²의 정사각형, 높이 100 mm, 두께 6 mm의 철제 모형에 12.5 L의 n-헵탄을 넣고 소화시험실 바닥에서 600 mm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소화시험실 중앙에 설치하고 실시한다.

다.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소화장치는 사용하한온도, 사용상한온도에서 16시간 이상 보존 후 각 1회 시험을 실시한다.